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2015. 4. 24 | 이상동_새사연 부원장 | sida7@saesayon.org

기업활동은 사회가 교육시킨 인력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로서의 사회와 상호 교류하면서 시장을 형성하며, 세금과 재투자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확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사회관계와 민주주의가 충분히 고려되거나 작동하고 있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관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 지금 법인세 증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명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제기가 근처에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법인세 증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를 위한 증세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3대 국가 기간 세제 중 법인세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두 개의 기간 세제인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각 납세여력 미비, 소비 침체 부작용 등이 증세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나 법인세,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는 납세여력이 충분해 소비 침체의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인하되어 왔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믿음,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다국적기업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득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가? 이러한 맹신이야말로 국민들의 삶에 오히려 질곡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실증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전파하는 논리를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법인세 증세를 원하는 이유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그러한 논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다. 기업 또는 경제의 효율은 국민경제 전체의 삶을 증진시키는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증세 요구 1. 국민경제에서 기업들의 몫이 갈수록 증가

법인세 증세가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최근 수 십 년 간 국민경제에서 기업이 가져가는 몫은 갈수록 커지고 가계가 가져가는 몫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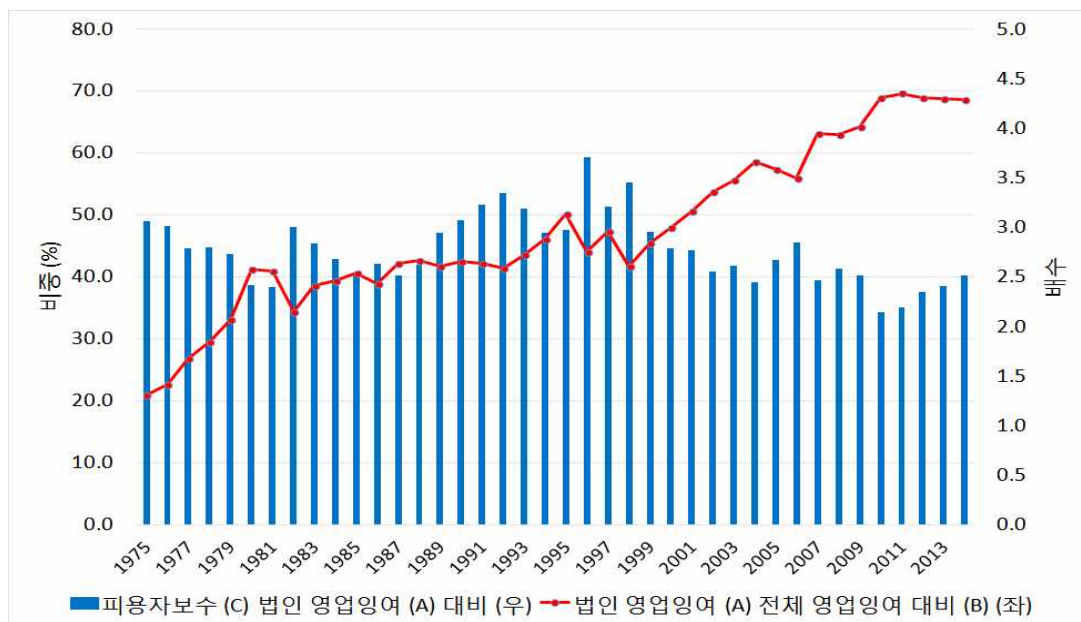
그림 1은 1975년 이후 법인의 영업잉여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영업잉여 가운데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을 보면 197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법인의 영업잉여, 즉 가계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잉여가 갈수록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975년 20%대에 불과하던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은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가파르게 상승하여 ‘민주화의 봄’ 을 맞이했던 1980년에 40% 대를 돌파하고 약 20년 가까이 50% 아래에 정체되어 있었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신자유주의 본격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 동안 또다시 급등하여 현재는 70% 수준에 거의 도달하였다.

해외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로 인해 법인의 영업잉여 비중이 증가하곤 했다. 예컨대 임노동자가 늘어나고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영업잉여가 법인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해외의 역사적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몫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림 1에서 피용자 보수 대비 법인의 영업잉여의 배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자. 1996년 법인 약 3.5배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임금의 몫은 1997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2년 2.0배 수준으로 역사상 최저였던 1981년의 값으로 떨어졌다. 즉, 법인 중심의 자본주의 구조 고도화의 결과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과실이 가계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림 1. 법인 영업잉여 증가 추세 (1975년 - 2014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DB website에서 계산



법인의 소득과 가계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런 사실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1975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구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였다. 표 1에서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vs. 가계의 소득 몫이 급변했음이 확인된다.

1980년 이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가계의 소득이 1.6배('80-86), 3.6배('86-96)로 증가하는 동안 기업의 소득은 각각 1.4배('80-86), 2.9배('86-96) 증가하여 가계 소득 증가를 따라 오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어 가계 소득이 약 20년 동안 불과 1.6배 증가하는 동안 기업 소득은 월등히 높은 3.4배나 증가하였다.

표 1. 시기별 제도부문별 소득 증가폭 (명목 소득 기준, 단위: 배수)

연대	'75-80	'80-86	'86-96	'96-14
기업	4.8	1.4	2.9	3.4
가계	2.2	1.6	3.6	1.6
정부	3.3	1.3	3.7	1.9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통계청 DB website에서 계산

주 1) 각 연대별 시작연도의 소득을 1로 했을 때, 종료연도의 소득을 배수로 나타낸 값

2) 기업 소득 = 법인의 영업잉여, 가계 소득 = 피용자 보수 + 영업 잉여, 정부 = 영업 잉여 + 생산 및 수입세

증세 요구 2.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법인세율, 대기업들에 혜택 집중

최근 20여 년동안 기업의 이익은 커져 갔지만 법인세율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30%에서 1991년 34%로 인상되었으나 이후 꾸준히 인하되어 2014년 현재 22%에 있다. 최고 법인세율이 1950년대에 75%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법인세율은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세율을 의미하는 실효세율도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명목세율보다 약 4~6%p 낮은 수준에 있다. (평균 실효세율 기준 16.8%)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조세감면 조치의 영향이 결정적인데 2012년 기준 법인세는 총 45.9조원이 징수되었고 법인세 조세지출액은 8.5조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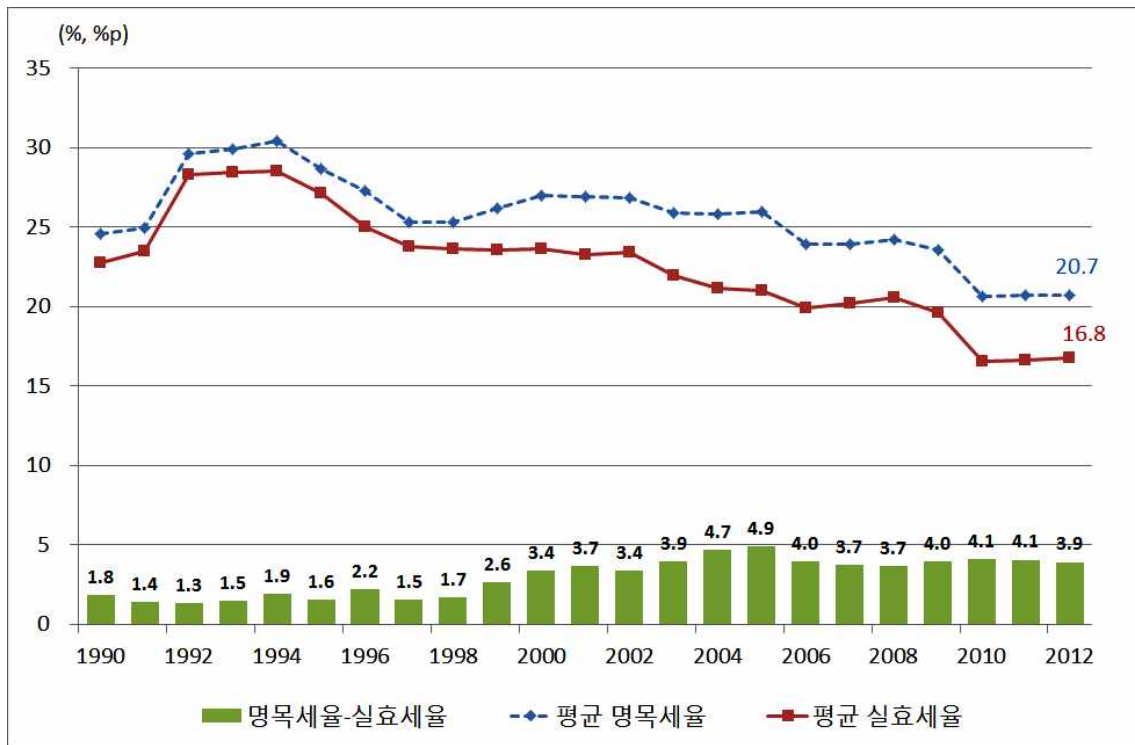
그런데 조세감면의 혜택은 자금여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에 더욱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 법인을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10억 이상 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그림 3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규모에 따라 10, 20, 22%의 3단계로 구분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는 누진체계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이다.



과세표준 소득 규모가 증가할수록 실효세율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500억 원 이상에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특히 5,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은 불과 17.1%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지나친 조세감면 혜택을 막고자 최저한세율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17%이므로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조세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5천억초과의 대기업들의 명목세율-실효세율 격차는 약 5%에 이른다. 10억 이상의 법인들에 대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구간인 것이다.

그림 2.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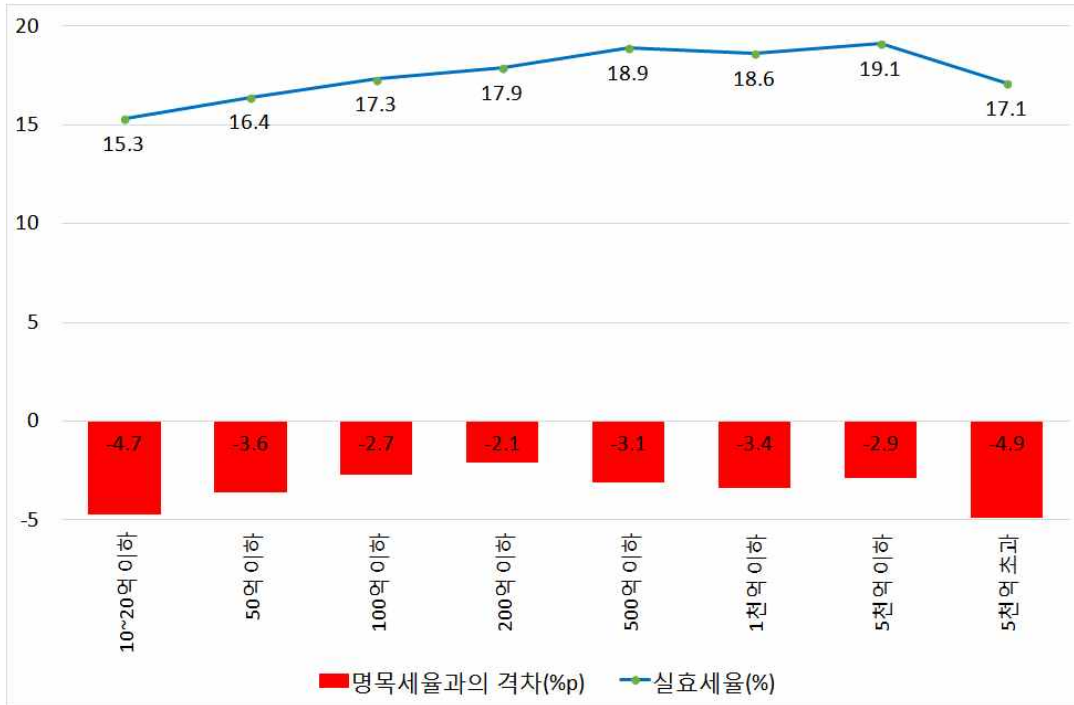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 II (법인세)”

1) 최저한세율: 실효세율의 최저를 정한 세율. 각종 조치에 따른 지나친 조세감면을 막기 위해 확립된 제도이다.



그림 3. 과세표준 10억원 이상 법인의 실효세율 현황 (2012년 기준)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 II (법인세)”

주: 대기업들의 최저한세율은 17%로 5천억 초과 기업들은 거의 최대한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음.

증세 요구 3. 늘어나지 않는 기업들의 사회 부담금

지금까지 영업잉여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세금(법인세)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들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를 통해서 사회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라는 암묵적 동의를 전제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고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기업 내부에 쌓아 두고 있다. 투자 부진, 혹은 과잉 유보금 문제는 다음 기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사회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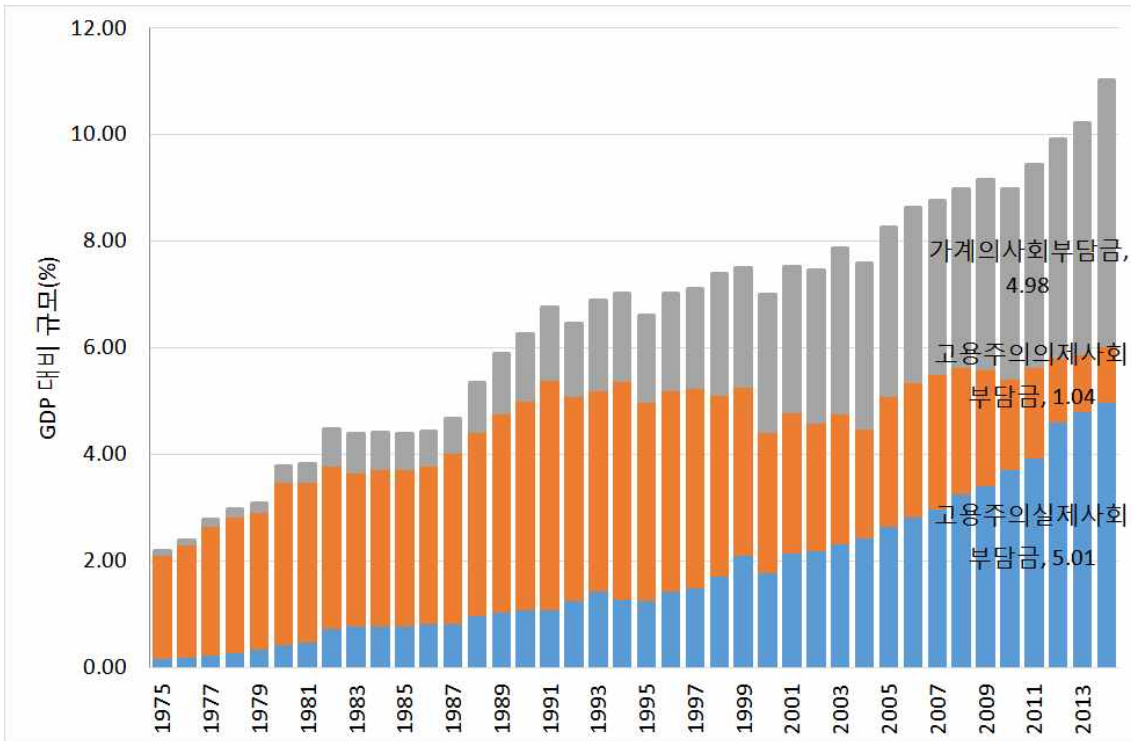
그림 4는 우리나라 사회 부담금의 40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75년 명목 GDP 대비 2.2%에 불과하던 사회 부담금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 사회부담금의 증가는 사회보험 제도와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로 고용주와 피용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데 기인한 것이다. 2014년 현재 가계는 총 73조 9,000억 원으로 전체 GDP 대비 5.0%이고, 고용주의 실제 사회부담금은 가계와 비슷한 74조 3,000억원(5.0%), 의제 사회부담금은 15조 5,000억원(1.0%)이다.

그런데 그림에서 실제 사회부담금과 의제 사회부담금을 합한 고용주의 사회부담금 약



6%는 90년대 초반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1년 합계치 5.4%에서 불과 0.6%p 증가했을 뿐이다. 추세적으로 보면 의제 사회부담금을 실제 사회부담금이 대체한 것일 뿐, 고용주의 총 사회부담금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림 4. 납부 주체별 사회부담금 추이(명목 GDP 대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2차소득분배계정을 기준으로 통계청 DB website에서 계산²⁾

- 주 1) 각 수치는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합계를 사용함. 따라서 여기서 고용주는 법인과 국가를 모두 합한 것임.
 2) '고용주의 실제사회부담금' 은 고용주가 보험기구(사회보장기금 및 민간기금형 기구 등)에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
 3) '고용주의 의제사회부담금(구 귀속사회부담금)' 은 고용주가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기금 또는 준비금의 적립 없이 자체재원으로 지급하는 사회수혜금을 말함.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2004) 참조.

나가며

기업활동은 사회와 동떨어져 존재하는 그 무엇이 아니다. 사회가 교육시킨 인력을 이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로서의 사회와 상호 교류하면서 시장을 형성하며, 세금과 재투자 등을 통해 경제사회의 확장에 기여한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이유는 기업활동이 이러한 사회관계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기대, 민주주의가 기업과 시장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한다.

2) 참고로 국민소득 계정은 사회부담금의 납부주체를 고용주와 피용자로 구분하기는 하나, 사실상의 부담주체는 피용자로 본다. 즉,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고용주가 사회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일 뿐 사회부담금은 궁극적으로 피용자의 소득에서 나오는 것, 즉 피용자 보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20여 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사회와 공유되는 과정은 사회관계와 민주주의가 충분히 고려되거나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사회관계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였다. 지금 법인세 증세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명시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문제제기가 근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인세 증세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경제적 효율의 문제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질 ‘법인세의 모든 것’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대기업과 초부유층이 해외를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를 주도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낳은 결과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법인세를 민주주의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

참고 문헌

국회예산정책처, 2014, “조세의 이해와 쟁점 II (법인세)”
한국은행, 2004, “[BOK] 국민계정, 용어해설 16 : 실제사회부담금과 귀속사회부담금”

2015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5년 4월 2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 직’ 앞세운 구조개혁의 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 앤, 강 위안, ‘슈퍼 달러’ 의 시대 도래?	박형준
고용,노동	1/15	노동시장 유연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 된 무주택 서민의 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 돌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 없는 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북	2/11	2015년 전망보고서 종합 : 침체의 지속, 복지 축소 정책의 위기	미디어팀
고용,노동	2/16	허점투성이 월급으로 은폐되는 ‘장시간 노동’	이정아
고용,노동	2/24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1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①자본주의 다양성 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 가는 길, 한국은 지금 어디에?:②한국사회경제모델의 나아갈 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 방향	최정은
고용,노동	3/16	노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이정아
고용,노동	3/19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2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5) :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	강세진
보건,의료	4/9	의료급여와 노인들이 재정부담의 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노동	4/16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5년 3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고용,노동	4/21	끝없는 최저임금 논쟁, 출산·양육 가능한 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 모든 것 : ① 분배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이상동